

『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1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가.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 하여 장기 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, 타시도 및 인천시 군·구와의 형평성을 맞추므로써 사기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
나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

1)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
- 2)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- 3)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

다.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,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함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20일

제23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, 직계비속,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으로서,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 미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생략)	제23조(특별휴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른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-- ----- -----르 <u>며,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<u>10일</u>	2. ----- -- <u>20일</u>
3. 재직기간 30년 이상: <u>10일</u>	3. ----- <u>20일</u>
<신설>	⑧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,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.